

2010년 전세계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

2010년에는 EU,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성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그간 미국과 EU의 주도로 진행된 세계적인 경쟁법 확산 및 집행 강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EU는 카르텔에 대한 형사처벌수단은 없지만 범위만 억제효과를 갖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집행 강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통한 카르텔 집행 강화 경향은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2011년에도 전 세계 과징금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2010년 전 세계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하여 경쟁법 관련 저널인 <Law360>이 분석한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1. 산업용 가스 카르텔 사건 : 16억6,000달러 (브라질)

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2010년 9월 1일, 산업용 가스 카르텔에 가담한 5개사 6명의 임원에게 총 16억 6,000달러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조사에 의하면 카르텔 가담회사들은 1998년부터 가격담합, 입찰담합, 고객할당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과징금은 관련 시장 매출액이 아닌 업체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5개사의 2003년 총매출액의 25%에 해당하였다.

2. 항공화물 카르텔 사건 : 11억 달러 (EU)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1월 9일,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 등 11개 항공화물운송업체의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 담합행위(1999~2006년)에 대하여 총 11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카르텔 가담업체들이 리니언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억 달러는 2010년 EU 집행위의 최대 부과 과징금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국제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과중한 규제완경이 오히려 담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일괄적으로 15%씩 감경되었다.

3. LCD 카르텔 사건 : 8억5,800만 달러 (EU)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 한국과 대만의 6

개 LCD 제조업체가 TV, 컴퓨터 모니터 시장 등에서 행한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행위(2001~2006년)에 대하여 총 8억5,8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삼성전자는 자진신고를 통하여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LG를 비롯한 3개사도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았다.

4. 욕실용품 카르텔 사건 : 7억6,100만 달러 (EU)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6월 23일, 17개 욕실용품 제조업체가 유럽 6개국 시장에서 행한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하여 총 7억6,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집행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거나 재정난을 이유로 '지불불능요청'을 제기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EU 집행위는 각 기업의 재정 현황과 향후 예측을 토대로 3개사에 50%, 2개사에 25%의 과징금 감경혜택을 각각 부여하였다.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 카르텔 사건에서 이러한 요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 철강 카르텔 사건 : 6억3,100만 달러 (EU)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사를 비롯한 16개 철강 제조업체의 18년에 걸친 PC강재(Prestressing Steel) 가격 및 시장 분할 담합행위에 대하여 총 6억3,100만 달러의 과징

금을 부과하였다. 자진신고한 DWK/Saarstahl사를 비롯하여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감면혜택이 주어진 반면, 법 위반경력이 있는 업체는 과징금이 가중되었다.

6. 수표 추심수수료 카르텔 사건 : 5억400만 달러 (프랑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2010년 9월 20일,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11개 은행의 수표 추심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하여 총 5억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수표의 80%를 처리하는 해당 은행들은 2002~2007년 기간 동안 4.3유로센트의 추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담합하였다. BNP 파리바(BNP Paribas)를 비롯한 5개 은행은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유로,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과거의 범위반경력을 이유로 각각 10% 및 20%의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7. DRAM 카르텔 사건 : 4억800만 달러 (EU)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19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9개 DRAM 제조업체의 1998~2002년에 걸친 가격 담합행위에 대하여 총 4억8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집행위는 이 사건에서 최초로 '합의결정' (Settlement Decision) 절차를 적용하여 9개사에게 일괄적으로 1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였다. 합의결정절차는 피심인이 카르텔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대가로 과징금의 10%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화(訴訟化)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8. 담배 카르텔 사건 : 3억4,700만 달러 (영국)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2010년 4월 16일, 임페리얼 토바코(Imperial Tobacco) 등 2개 담배회사와 9개 소매업자 간의 담배가격 담합협약 체결에 대하여 경쟁법(Competition Act) 발효 후 최고 금액인 총 3억4,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위 2개사는 소매업자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자사 담배와 경쟁사 담배의 소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9. 가축사료 카르텔 사건 : 2억2,700만 달러 (EU)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20일, 12개 가축사료 제조업체가 약 35년간 유럽 전역에서 행한 가격 및 시장분할 담합, 판매조건 조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총 2억2,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 집행위가 일반적인 집행절차(Enforcement Process)와 합의절차(Settlement Process)를 병용하여 처리한 최초의 사건이다.

10. 광섬유 케이블 카르텔 사건 : 1억8,000만 달러 (일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2010년 5월 25일, 히타치(Hitachi)사 등 9개 광섬유 케이블 부품 제조업체가 대형 통신업체와 휴대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 담합행위에 대하여 총 1억8,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취위는 반독점법 제3조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지명령 등을 조치하였다. 담합 참가업체들은 범위반행위를 종료하고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판매사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였다.



2011년에 주목되는 경쟁법 관련 소송

법무부 관련

먼저 미국 법무부(DOJ)는 미시간 주 소재의 건강보험사인 BCBSM이 병원과 체결한 계약에 최혜국 조항을 삽입하여 보험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의료비용을 인상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10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DOJ는 BCBSM이 최혜국 조항을 통하여 보험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BCBSM의 경쟁사에 대하여 병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여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BCBSM은 동 조항으로 미시간 주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한 최대의 할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해당 병원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최혜국 조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어떤 경우에 경쟁법상 문제가 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에 DOJ가 처리한 2건의 최혜국 조항 관련 건, 즉 U.S. v. Delta Dental of Rhode Island 건과 U.S. v. Medical Mutual of Ohio 건은 모두 동의명령합의(Settlement)로 종결되었으며, 지금까지 최혜국 조항의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은 없었다. 이

번 건에 대한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반복적 이슈가 되어 온 최혜국 조항의 경쟁저해성 문제에 대한 지침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DOJ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 이용고객에 대한 할인·보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연회비 등의 사용비용이 더 낮은 다른 신용카드의 소개를 금지하도록 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를 2010년 10월 제소한 바 있다(함께 조사를 받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최근 동의명령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가맹점에 자사의 신용카드 사용과 지불방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자사는 시장지배력이 없고 DOJ의 조치가 실제로는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2006년 세계적인 신용카드 정보지인 <닐슨 리포트>(Nilson Report)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은 비자 44%, 마스터카드 3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0%, 디스커버(Discover) 5% 씩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번 건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신용카드 관련 캐나다 동향

- ◎ 캐나다 경쟁당국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관하여 가맹점과 맺은 계약내용이 경쟁법 제76조(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경쟁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2010년 12월 15일).
 - 상기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가 문제가 됨
 -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현금이나 직불카드와 같이 가맹점에 적은 비용(수수료)을 유발하는 지불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권장하는 행위 제한
 - 가맹점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발행하는 한 종류의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그 회사의 모든 신용카드를 받도록 요구
 - *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09년 캐나다 신용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거래금액은 2,400억 캐나다달러에 이를
 -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 자기 회사의 카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할 유인이 발생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의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경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

1)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게 적용하는 가장 좋은 거래조건을 자기에게도 적용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조항으로, 가격 할인의 동기 감소로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할인을 앞세운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아울러 DOJ는 دن푸즈(Dean Foods)가 포머스트팜(Foremost Farms)으로부터 위스콘신 주의 2개 유가공 공장을 인수한 기업결합을 원상대로 회복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0년 1월에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동 기업결합은 그 규모가 작아 경쟁당국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DOJ는 동 기업결합이 3개 주(일리노이 주, 미시건 주, 위스콘신 주)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학교, 식료품점, 소매상 등에 대한 우유판매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결합 완료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위의 2개 공장을 매각할 것과 앞으로 우유공장을 매입하는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DOJ에 통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그 규모가 작고 이미 완성된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당국의 조사 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방거래위원회 관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의약품 진단 및 실험 관련 서비스 사업자인 랩코프(LabCorp)가 경쟁사인 웨스트클리프 메디컬(Westcliff Medical Laboratories Inc.)을 인수하는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2010년 12월 1일 심판절차를 개시하였다. FTC는 동 기업결합으로 캘리포니아 주 지역 정액제 서비스 시장에서 상위 2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89%에 달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건의 판단에 있어서 관련 상품시장을 진단 건수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정액제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C의 토마스 로슈(J. Thomas Rosch) 위원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시장획정이 잘못되었다며 심판절차 개시에 소수 반대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건은 경쟁당국의 시장획정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진행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는 장기간에 걸쳐 논란이 되어 온 역지불합의(Reverse-payment Settlement)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역지불합의'는 그동안 많은 연방항소법원들이 그 해결책을 고심하여 온 사안이다. 특히 시프로(Cipro, 항생제)에 대한 바이어(Bayer, 특허권 보유)사와 바(Barr, 복제약 제조)사간 역지불합의건을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제2항소법원 판결에 대하여 약품 구매자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그동안 FTC는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경쟁법 위반행위라고 꾸준히 주장하여 왔으나 승소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연방대법원이 역지불합의에 대한 오랜 논란을 어떻게 종결지을지 여부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되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FTC는 룬드벡(Lundbeck)사가 유아용 선천적 심장질환 치료제인 네오프로펜(NeoProfen)과 인도신 IV(Indocin IV)의 특허권을 모두 확보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2008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 건 특허권 취득 이후 인도신 IV의 가격은 1병에 36달러에서 500달러로 약 1,300% 인상되었고, 네오프로펜 가격도 이와 비슷하게 1병당 483달러로 책정되었다. FTC는 약품 특허권 매각과 함께 불법 기업결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것도 요구하였다. 한편, 미네소타 지방법원은 2009년 8월 FTC가 본 건 관련 치료제인 네오프로펜과 인도신 IV가 같은 상품시장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룬드벡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에 따라 경쟁당국이 이미 완성된 기업결합을 취소하면서 부당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된다면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 타

드비어스 SA(De Beers SA,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사를 둔 다이아몬드 생산·판매회사)의 가격 카르텔에 대한 미국 전역의 구매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집단(Class)의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3연방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 판결(en banc Decision)이 내려질 예정이다. 항소법원 소재판부는 가격 카르텔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간접구매자의 법적 권한이 각 주(州)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고, 집단을 승인한 1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원고집단 자격을 얻고자 할 때 각 주 반독점 법규의 차이점이 너무 클 경우의 집단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이 고려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집단 구성원들은 소재판부 결정의 철회와 전원재판부의 재심리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 8월 항소법원이 이를 수용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에서 간접구매자 집단의 원고자격 인정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킨 것으로, 전원재판부 판결을 통하여 유사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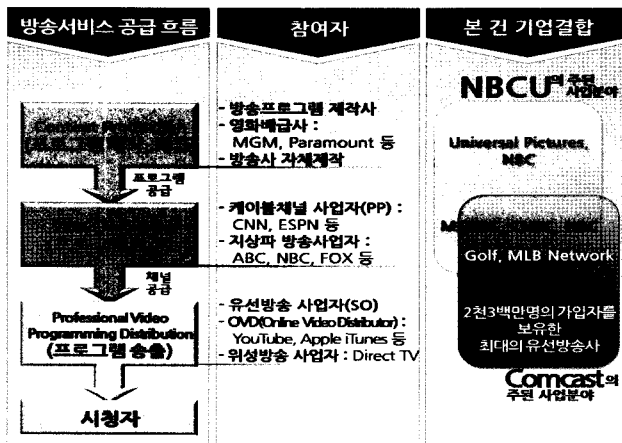
DOJ, Comcast / NBCU 기업결합건 조건부 승인 합의

미국 법무부(DOJ)는 2011년 1월 18일, 케이블 TV망 운영 업체인 컴캐스트(Comcast)와 프로그램 채널 공급사인 NBC 유니버설(NBC Universal Inc.; NBCU) 간의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합의(Settlement)를 결정하였다.

DOJ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동 기업결합으로 케이블 방송·위성방송·전화·온라인 등의 관련 시장에서 다음

는 조건 부과를 금지한다. 셋째, 결합회사가 컴캐스트의 경쟁사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프로그램 제작회사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넷째, 연방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가 제정한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규정을 위반하는 경쟁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오픈 인터넷 규정은 인터넷의 개방성

[참고] 미국의 방송시장 구조



과 같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컴캐스트의 경쟁업체들에 대한 NBCU 프로그램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업체들과 소비자의 해당 프로그램 구입가격이 상승할 위험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투자 감소와 프로그램의 종류와 제작 편수 감소 등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DOJ는 컴캐스트가 제안한 다음의 5가지 행태적 시정조치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첫째, 결합회사는 온라인 비디오 공급업자(Online Video Distributor; OVD)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공급시장에서 컴캐스트의 경쟁사에게 NBCU 콘텐츠를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둘째, 컴캐스트가 콘텐츠 공급사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사와의 협상을 과도하게 제한하

고 자유로운 정보 흐름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광대역통신망 공급업자가 소비자들의 특정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섯째, 컴캐스트는 인터넷 기반 방송 사이트인 훌루(Hulu)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한편, DOJ는 이번 건에 대하여 FCC와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2011년 1월 17일 FCC 역시 DOJ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다.

이번 건에 대하여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Varney) DOJ 독금차관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 방송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문제 해결방식으로 구조적 조치(예를 들어, 기업분할)를 선호하면서 행태적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DOJ의 입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집행위, 수평적 합의 가이드라인 등 개정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 14일, 경쟁사업자간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하위 규정인 가이드라인(Guidelines)과 규정(Regulation) 2건을 개정하였다.

[Horizontal Guidelines 및 관련 Block Exemption Regulation]

① Horizontal Guidelines

- R&D, 생산, 구매, 판매, 표준화, 정보 교환 등 사업자간 수평적 합의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일반 지침

② Block Exemption Regulation

- 일정한 합의가 별도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경쟁적 효과가 없거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아 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
 - * R&D 합의 : 합의 참여자 시장점유율 < 25%,
R&D BER 요건분업화 합의 : 합의 참여자 시장점유율 < 20%, Specialisation BER 요건
- R&D 또는 분업화 합의 중 BE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Horizontal Guidelines의 적용대상이 됨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이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유럽경제발전 전략인 'Euro 2020'의 일환"이라고 소개하면서 "특히 법집행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과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방지가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Guidelines에서는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 보완하고 사업자간 정보 교환의 위법성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다. 표준화 측면에서는 해당 절차가 경쟁사업자에게 개방되고 관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며, 표준에 포함되는 지적재산권 보유자에게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경우에 절차적 투명성을 인정하여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용조건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기구가 표준 설정 전에 표준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최대 사용료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기술보유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허용하였다.

정보 교환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 교환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지향적인 경우는 친(親)경쟁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가격, 영업전략 등), 시장 특성(집중도, 투명성,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Regulation에서는 R&D 합의 및 분업화 합의의 경쟁법적 제외범위를 확대하였다. R&D와 관련해서는 경쟁사업자간 공동 R&D와 함께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R&D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Paid-for Research)도 적용제외대상에 포함하였고, R&D 결과물을 사업자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분업화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쟁사업자간 합의를 통하여 제품 등을 분업 생산하는 경우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간재·부품의 분업생산의 경우도 합의 참여자들의 최종 제품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를 적용제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개정된 Guidelines와 Regulation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쟁당국, 반독점법 하위규정 시행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 한다)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이라 한다)은 2009년에 초안을 발표한 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반독점법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발개위는 「반가격독점규정」(발개위령 2010년 제7호)과 「반가격독점 법집행 절차규정」(발개위령 2010년 제8호)을, 공상총국은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공상총국령 2010년 53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공상총국령 2010년 제54호) 및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공상총국령 2010년 제55호)을 각각 제정하고, 향후 반독점법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발개위가 제정한 「반가격독점규정」은 가격 관련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행정권력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위법한 카르텔의 입증요건으로 가격의 동조적 인상 및 사업자 간의 의사 교환을 적시(제6조)하고 있고, 경쟁사업자간 카르텔은 물론 판매자·구매자 간의 합의, 사업자단체를 통한 카르텔도 금지(제7~제9조)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유형으로 가격 남용, 약탈적 가격 부과, 거래 거절, 배타적 거래, 불이익 제공, 가격차별 등을 포함(제11~제16조)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1사업자 50%, 2사업자 66%, 3사업자 75%, 10% 미만 제외)도 제시(제19조)하고 있다.

특히 행정권력을 남용한 행정기관 및 공공조직의 가격독점행위 및 행정기관의 가격경쟁제한규칙 제정 금지를 명기(제20~제23조)하고 있다.

「반가격독점 법집행 절차규정」은 국무원 및 지방정부의 가격독점 법집행 주관부서의 반독점법 집행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사수단으로 현장조사, 피조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열람·복사, 증거 압수 및 은행계좌 조회 등의 방법을 적시(제6조)하고 있다.

아울러 카르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초 신고자는 면제, 2순위신고자는 50% 이상 감경, 기타 신고자는 50% 이하 감경을 명시(제4조)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제9조)와 직권 남용 금지 의무(제23조)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상총국이 제정한 「독점협의행위 금지규정」은 상품의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 분할, 기술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 거절 등(제4~제7조) 가격과 관련되지 않은 카르텔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간 합의·결정(서면·구두 불문)을 금지하며 행위의 일치·의사 교환에 대하여 시장상황 등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추정도 가능(제2조, 제3조)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하였지만 신고순서나 증거내용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세부기준을 명기(제11조)하지는 않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은 가격과 관련되지 않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하면서 거래 거절, 부당한 거래조건 부과, 끼워팔기 및 거래상대방 차별 등을 적용대상(제4~제7조)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지배력 판단시 시장점유율, 시장봉쇄력, 자본·기술력, 인접시장 및 신규 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제10조)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건(1사업자 50%, 2사업자 66%, 3사업자 75%, 10% 미만 제외)도 제시하고 있다.

「행정권력 남용 경쟁제한행위 규정」은 행정기관 및 공공조직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정권한(인허가, 입찰 등)을 남용한 다른 지역 상품·사업자의 진입 제한, 경쟁제한적인 규정 제정 등을 적용대상(제3조, 제4조)으로 명시하고 있다.